

# 일반공급 |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 서류	발급 기준	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		○	무주택 서약서	-	당사 건본주택에 비치, 무주택 입증서류(무주택 서약서로 대체)
		○	주택처분확약서	-	당사 건본주택에 비치,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
		○	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	-	당사 건본주택에 비치
		○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
		○	인감도장	-	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
		○	신분증	계약자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)
		○	주민등록등본	계약자	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	○	주민등록초본	계약자	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	○	가족관계증명서	계약자 (또는 배우자)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"상세"로 발급 -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
	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계약자, 세대원	당해 지역 우선 공급 신청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(거주기간 없을 경우 해당 없음) -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
		○	가족관계증명서	직계 존속	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	○	복무확인서	계약자	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4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시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(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)		○	등기사항전부증명서	해당 주택	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
		○	무허가건물확인서	해당 주택	또는 철거예정증명서
		○	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	해당 주택	주택공시가격증명원(개별주택가격 확인서,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포함) 등
		○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해당 주택	
		○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-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
일반 공급		○	주민등록초본	직계 존비속	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
		○	혼인관계증명서	계약자/ 직계비속	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"상세"로 발급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"상세"로 발급
대리인 계약 시 추가사항 (*본인외모두)		○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계약자	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
		○	위임장	계약자	당사 건본주택에 비치,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
		○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※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10.23)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합니다.

# 신혼부부 특별공급 |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 서류	발급 기준	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동	○		무주택 서약서	-	당사 건분주택에 비치, 무주택 입증서류(무주택 서약서로 대체)
		○	주택처분확약서	-	당사 건분주택에 비치,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
	○		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	-	당사 건분주택에 비치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
	○		인감도장	-	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
	○		신분증	계약자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)
	○		주민등록등본	계약자	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초본	계약자	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계약자 (또는 배우자)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"상세"로 발급 -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
	○		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	본인	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(가입) 확인서 발급 (단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) 인터넷청약(청약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계약자, 세대원	당해 지역 우선 공급 신청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(거주기간 없을 경우 해당 없음) -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
		○	가족관계증명서	직계 존속	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복무확인서	계약자	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4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시	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(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)	○		등기사항전부증명서	해당 주택	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
	○		무허가건물확인서	해당 주택	또는 철거예정증명서
	○		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	해당 주택	주택공시가격증명원(개별주택가격 확인서,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포함) 등
	○	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해당 주택	
	○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-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
신혼부부 특별공급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혼인신고일 확인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 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(발급처:국민건강보험공단) ※건강(의료)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(의료)보험증 제출 가능
	○		소득증빙 서류	세대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소득입증서류)
	○		기본증명서	자녀	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
	○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 가능해야 함)
	○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입양의 경우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당사 건분주택에 비치
	○	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당사 건분주택에 비치
대리인 계약 시 추가사항 (*본인외모두)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계약자	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
	○		위임장	계약자	당사 건분주택에 비치,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
	○	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※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10.23)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합니다.

■ 소득입증 제출 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-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 -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)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	- 해당직장 - 세무서
	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-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 -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	-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-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 -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-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-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 명세표 (근로소득지급조서)(직인날인)	-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-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- 사업자등록증	-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-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(단,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반드시 제출)	- 세무서
	신규사업자	-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-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본) - 사업자등록증	- 국민연금 관리공단 - 세무서
	법인사업자	-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- 법인등기부등본	- 세무서 - 등기소
	보험모집인 / 방문판매원	-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-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 급여명세표(직인날인)	- 세무서 -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수급자	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-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-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-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: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(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)	- 해당직장	
무직자	- 비사업자 확인각서(건분주택에 비치)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 소득 등)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- 접수장소	

# 기관추천 특별공급 |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 서류	발급 기준	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	○		무주택 서약서	-	당사 건본주택에 비치, 무주택 입증서류(무주택 서약서로 대체)
		○	주택처분확약서	-	당사 건본주택에 비치,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
	○		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	-	당사 건본주택에 비치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
	○		인감도장	-	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
	○		신분증	계약자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)
	○		주민등록등본	계약자	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초본	계약자	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계약자 (또는 배우자)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"상세"로 발급 -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
	○		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	본인	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(가입) 확인서 발급 (단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) 인터넷청약(청약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계약자, 세대원	당해 지역 우선 공급 신청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(거주기간 없을 경우 해당 없음) -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
		○	가족관계증명서	직계 존속	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	○	복무확인서	계약자	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4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시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(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)	○		등기사항전부증명서	해당 주택	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
	○		무허가건물확인서	해당 주택	또는 철거예정증명서
	○		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	해당 주택	주택공시가격증명원(개별주택가격 확인서,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포함) 등
	○	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해당 주택	
	○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-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
기관추천 특별공급	○		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	본인	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,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,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
대리인 계약 시 추가사항 (*본인의모두)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계약자	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
	○		위임장	계약자	당사 건본주택에 비치,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
	○	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※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10.23)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합니다.

# 다자녀 특별공급 |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 서류	발급 기준	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	○		무주택 서약서	-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, 무주택 입증서류(무주택 서약서로 대체)
		○	주택처분확약서	-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,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
	○		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	-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
	○		인감도장	-	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
	○		신분증	계약자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)
	○		주민등록등본	계약자	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초본	계약자	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계약자 (또는 배우자)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"상세"로 발급 -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
	○		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	본인	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(가입) 확인서 발급 (단, 국가공자, 장애인,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) 인터넷청약(청약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계약자, 세대원	당해 지역 우선 공급 신청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(거주기간 없을 경우 해당 없음) -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
		○	가족관계증명서	직계 존속	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	○	복무확인서	계약자	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4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시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(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)	○		등기사항전부증명서	해당 주택	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
	○		무허가건물확인서	해당 주택	또는 철거예정증명서
	○		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	해당 주택	주택공시가격증명원(개별주택가격 확인서,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포함) 등
	○	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해당 주택	
	○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-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
다자녀가구 특별공급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[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 발급]
	○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	계약자 (또는 배우자)	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계약자 (또는 배우자)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	계약자 (또는 배우자)	입양의 경우
	○		주민등록표등본	자녀	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	자녀	재혼 · 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○	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·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"상세" 발급
대리인 계약 시 추가사항 (*본인외모두)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계약자	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
	○		위임장	계약자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,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
	○	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※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10.23)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합니다.

#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|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 서류	발급 기준	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	○		무주택 서약서	-	당사 건본주택에 비치, 무주택 입증서류(무주택 서약서로 대체)
		○	주택처분확약서	-	당사 건본주택에 비치,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
	○		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	-	당사 건본주택에 비치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
	○		인감도장	-	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
	○		신분증	계약자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)
	○		주민등록등본	계약자	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초본	계약자	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계약자 (또는 배우자)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"상세"로 발급 -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
	○		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	본인	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(가입) 확인서 발급 (단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) 인터넷청약(청약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계약자, 세대원	당해 지역 우선 공급 신청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(거주기간 없을 경우 해당 없음) -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
		○	가족관계증명서	직계 존속	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	○	복무확인서	계약자	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4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시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(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)	○		등기사항전부증명서	해당 주택	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
	○		무허가건물확인서	해당 주택	또는 철거예정증명서
	○		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	해당 주택	주택공시가격증명원(개별주택가격 확인서,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포함) 등
	○	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해당 주택	
	○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-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
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[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]
	○		주민등록표초본	직계비속	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)
	○	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	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,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[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]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 /직계비속	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대리인 계약 시 추가사항 (*본인외모두)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계약자	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
	○		위임장	계약자	당사 건본주택에 비치,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
	○	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※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10.23)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합니다.